

오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

제정 2003년 12월 11일 규칙 제52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오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등)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에 의한다. 다만,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위반시 당해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

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.

제3조(과태료 부과취소(변경) 통지서)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부과취소(변경) 통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.

제4조(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법원통보서 등)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.

②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.

제5조(과태료 수납부)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오 산 시

문서번호

수 신

제 목 과태료처분통지

1.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가. 위반일시 :

나. 위반내용 :

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의 규정에 의하여
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
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3.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
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
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붙 임 :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. 끝.

년 월 일

오 산 시 장 (인)

과태료 납부통지서
(개인통지용)

과태료 납부서
(은행보관용)

영수필통지서
(시통보용)

영수증
(개인보관용)

제 호	회계년도	년도
세입과목	성명	
	남 부	
의무자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,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
년	월	일
오 산 시 장 (인)		

제 호	회계년도	년도
세입과목	성명	
	남 부	
의무자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		
년	월	일
수납은행 : (인)		
수납일부인		

제 호	회계년도	년도
세입과목	성명	
	남 부	
의무자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.		
년	월	일
수납은행 : (인)		
수납일부인		
오 산 시 장 귀 하		

제 호	회계년도	년도
세입과목	성명	
	남 부	
의무자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		
년	월	일
수납은행 : (인)		
수납일부인		
취급자인		

[별지 제3호서식]

(갑)

(처분기관 보관용)

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

발행번호	제	호	회계년도	세입과목	계좌번호
위반행위자 성명	주소		납부기간	까지	납부장소
과태료금액	원				
위반사실 일시	내용		의견제출기한 단속공무원 확인		
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	조				
위반행위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	까지		

특기사항

○ 표의 뒷면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

(을) (피처분자 보관용)

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

발행번호	제 호	회계년도	세입과목	계좌번호
위반행위자	성명	주소		
과태료금액	원	납부기간	까지	납부장소
위반사실	일시	내용		
위반법률	폐기물관리법 제 조	발부일자	의견제출기한	까지
위반행위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단속공무원 확인	

1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2.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,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.
3.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.

오 산 시 장 (인)

- 표증 발행번호, 회계년도, 세입과목, 계좌번호, 위반행위자, 과태료금액, 납부기간, 납부장소의 뒷면에 복사용머지를 부착 인쇄

(수납은행 보관용)

(병)

과 태 료 납 부 서

발행번호	제	호	회계년도	세입과목	계좌번호
위반행위자	성명	주소			
과태료금액	원		납부기간	까지	납부장소
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

년 월 일

수납은행 :

수납납자 도장	
	오 산 시 장 (인)

- 표증 발행번호, 회계년도, 세입과목, 계좌번호, 위반행위자, 과태료금액, 납부기간,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머지를 부착 인쇄

(정)

(개인 통지용)

과태료 납부 영수증

발행번호	제	호	회계년도	세입과목	계좌번호
위반행위자	성명	주소			
과태료금액	원		납부기간	까지	납부장소
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

수납은행 :

수납날자	도장	취	금	자	인

- 표증 발행번호, 회계년도, 세입과목, 계좌번호, 위반행위자, 과태료금액, 납부기간,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머지리를 부착 인쇄

(시 통보용)

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

발행번호	제	호	회계년도	세입과목	계좌번호
위반행위자	성명	주소			
과태료금액	원	납부기간	까지	납부장소	

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수납은행 :

수납납자 도장

오 산 시 장 귀하

(무)

[별지 제4호서식]

과태료납부독촉장
(개인통지용)

과태료납부독촉장
(은행보관용)

영수필통지서
(시통보용)

영수증
(개인보관용)

제 호	회계년도	년도
세입과목		
납 부 의 무 자	성명	
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 으니 년 월 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 및 우체국, 농협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.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.		
년 월 일		오 산 시 장 (인)

제 호	회계년도	년도
세입과목		
납 부 의 무 자	성명	
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		
년 월 일		(인)
수납은행 :		
수납일부인		

제 호	회계년도	년도
세입과목		
납 부 의 무 자	성명	
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 지합니다.		
년 월 일		(인)
수납은행 :		
수납일부인	오산시장 귀하	

제 호	회계년도	년도
세입과목		
납 부 의 무 자	성명	
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		
년 월 일		(인)
수납은행 :		
수납일부인	취급자인	

오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

[별지 제7호서식]

오 산 시				
문서번호				
수 신 ()지방법원장				
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				
1.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. 2.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, 본인 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,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이의 제기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과 태 료 처 분 의 내 용	과태료 납부 일자 통지		과 태 료 부과금액	
	납 부 기 한	까지	부 과 기 관	
	과 태 료 처분사유			
이 의 제 기 일				
이 의 신 청 사 유				
이의신청에 대한 의견				
첨부 : 1.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. 2.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. 끝.				
오 산 시 장				

[별지 제8호서식]

과 태 료 부 과 징 수 내 역	① 일련 번호	
	② 통지서 번호	
	③ 과태료처분 일지	
	④ 독촉장 발부일	
	⑤ 당초	
	⑥ 독촉	
	⑦ 금액	
	⑧ 성명	
	⑨ 주소	
	⑩ 과태료 납부일	
	⑪ 이의 제기일	
	⑫ 원인 범통보일	

